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: 2015. 10.

제 출 자:동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(행정자치부 훈령, 2014.11.14)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함

- "경리관"을 → "재무관" 으로 변경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(1) 입법예고(2015. 8. 13 ~ 9. 2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(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경리관"을 "재무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	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
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	
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.	
1. 징수관, <u>경리관,</u> 물품관리관,	1. 징수관, <u>재무관</u> ,
채권(무)관리관, 지출원, 출납	
원 및 유가증권(수입증지 포	
함) 취금공무원과 그 대리자	
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	